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2185 제출연월일: 2024. 7. 24.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와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신청이 있을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사·동일과제 신속처리 절차 마련(안 제10조의3제8항 및 제10조의6제7항 신설)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와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회신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그 검토결과를 포함한 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는 전문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안 제35조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산업융합 신제품 ·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감독 및 임시허가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함.

다.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35조의3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함.

법률 제 호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한 소관 기관의 조정
- 3.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의 검토·조정·처리
- 4. 그 밖에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 항) 중 "제6항 및 제7항"을 "제6항, 제7항 및 제8항제2호"로 하고, 같 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제8항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말한다)"로하고, 같은 조 제12항 본문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제14항 중 "제10항까지, 제12항 및 제13항과"를 "제13항까지와"로 한다.

-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 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 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 1.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 이내로 단축
- 2. 제5항에 따른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제6항에 따른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제10조의3제8항"을 각각 "제10조의3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제10조의5제1항 중 "제10조의3제10항"을 "제10조의3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0조의3제8항"을 "제10조의3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0조의3제10항"을 "제10조의3제11항"으로 하고, 같

은 조 제8항 및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제10조의3제8항"을 각각 "제1 0조의3제9항"으로 한다.

제10조의6제7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6항 및 제7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본문 중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제7항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본문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및 제14항(종전의 제13항) 중 "제9항"을 각각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및 제14항(종전의 제15항) 중 "제9항"을 "제1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종전의 제15항) 중 "제14항"을 "제15항"으로 하다.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 1.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 이내로 단축
- 2. 제5항에 따른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제6항에 따른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0조의6제7항"을 "제10조의6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35조의3(포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 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차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8항 및 제10조의6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의3제1항 또는 제10조의6제1

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아 혀 행 개 정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원회) ① ~ ⑨ (생 략) 원회)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⑩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 검토 · 조정 · 처리하거나 위원 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 둔다. 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하여 1.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 소관 기관을 정하거나 조정하기 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둘 수 있다. 것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 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 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의 심의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 시허가 등과 관련한 소관 기 관의 조정 3.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의 검토・조정・처리 4. 그 밖에 위원회 업무의 효율 적인 수행ㆍ지원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① (생략)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 ⑦ (생 략) <신 설>

- ① ~ ⑦ (현행과 같음)
 -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 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 품 · 서비스의 내용 · 방식 · 형 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 화할 수 있다.
 - 1.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 이내로 단축
 - 2. 제5항에 따른 규제특례심의 위원회에 상정 및 제6항에 따 른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 의: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 문위원회의 심의. 이 경우 전 문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 건을 붙일 수 있다.
 - ----- 제6 (9) -----항, 제7항 및 제8항제2호----
-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 항 및 제7항의 심의·조정 결과

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서비 스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하 여야 한다.

-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u>제8</u> 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 비스에 대한 규제특례의 심사기 준을 규제특례의 신청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 ①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u>규제특례심의</u> 위원회가 정한다.

① 삭 제

② 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③ (생략)

| <u>⑩</u> <u>제9항</u> |
|---------------------|
| |
| |
| |
| |
| |
| <u> </u> |
| 규제특례심의 |
| 위원회(제8항에 따라 절차를 간 |
| 소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
| <u>말한다)</u> |
| |
| ② 제9항 |
| |
| |
| |
| |
| |
|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

| 14) | 제] | l항부 | 터 <u>제</u> | 10 | 항까기 | (), x | 112 |
|-----|----|-----|------------|----|-----|-------|-----|
| 항 | 및 | 제13 | 항과 | 관 | ·련된 | 세투 | 나 |
| 항 | 및 | 규제 | 특례의 | 의 | 심사기 | 기준, | 절 |
| 차 | 및 | 방법 | 등에 | 필 | 요한 | 사형 | 당은 |
| 대 | 통령 | 명으 | 로 정 | 한 | 다. | | |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산업통 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실증 등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u>제10</u> <u>조의3제8항</u>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하려는 자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건강·안전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 ④ 삭 제

⑤ (생략)

| ④ 제13항까지와 |
|--------------------|
| |
| |
| |
| <u>.</u> |
| 세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 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
| |
| <u>제10조의3제9항</u> |
| |
| |
| |
| ② <u>제10</u> |
| 조의3제9항 |
| |
| |
| |
| |
| |
| |
| |
| |
| |
| |
| |
| ⑤ (현행과 같음) |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제10조의3제7항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심
 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3. (생략)
- ⑦·⑧ (생 략)
-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의3제10항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만료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생략)
 - ③ <u>제10조의3제8항</u>에 따른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이 조 제1

| 6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
| 2 |
| <u> </u> |
| |
| |
| 3. (현행과 같음) |
| ⑦·⑧ (현행과 같음) |
| 세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 의 연장 등) ① |
| <u>제10조의3제11항</u> |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
| ③ 제10조의3제9항 |
| |

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효기간 만 료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첨부하여 규제 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 비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 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④ ~ ⑥ (생 략)
- ⑦ 제1항 및 제10조의3제10항에 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⑧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이 조 제6 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 를 포함한다)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등 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 ⑨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제3항에 따

| ④ ~ ⑥ (현행과 같음) |
|----------------------|
| ⑦ <u>제10</u> 조의3제11항 |
| |
| |
| |
| |
| |
| <u>.</u> |
| ⑧ <u>제10조의3제9항</u> |
| |
| |
| |
| |
| |
| |
| |
| ⑨ 제10조의3제9항 |
| |

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 외한다)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 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 항을 준용한다.

①·① (생 략)

제10조의6(임시허가) ① ~ ⑥ (생 략)

<신 설>

①·① (현행과 같음)

제10조의6(임시허가) ① ~ ⑥ (현 행과 같음)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 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 · 서비스의 내 용 · 방식 · 형태 등과 실질적으 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 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 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 이내로 단축
- 2. 제5항에 따른 규제특례심의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 항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 하여 임시허가를 하여야 한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 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 우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 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을 임시허가의 신청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 ⑨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u>규제특례심의</u> 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유효기 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 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서 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 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 위원회에 상정 및 제6항에 따 |
|---------------------|
| 른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 |
| 의: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 |
| 문위원회의 심의. 이 경우 전 |
| 문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 |
|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 |
| 건을 붙일 수 있다. |
| <u>⑧</u> <u>제</u> 6 |
| <u>항 및 제7항제2호</u> |
| |
| |
| <u>⑨</u> <u>제</u> 8 |
| <u>ठ</u> ो |
| |
| |
| |
| |
| <u> </u> |
| 규제특례심의 |
| 위원회(제7항에 따라 절차를 간 |
| 소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
| <u> 말한다)</u> |
| |
| |
| |
| |

- ① 제9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제7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아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
- 아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u>제9항</u>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 품·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 거가 되는 법령 정비에 착수하 여야 한다.
- ① 제9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 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 ⑪ 제10항 |
|--------|
| |
| |
| |
| , |
| ① 제8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0항 |
| · 제10항 |
| · 제10항 |
| · 제10항 |

| (14) | (생 | 략) |
|------|-----|-----|
| A 1 | \ O | -1/ |

- ⑤ 제1항부터 <u>제14항</u>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7(임시허가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의6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제10조의6제6항 후단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u>제8항</u>에 따 른 임시허가 심사기준을 충족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②・③ (생 략)

<신 설>

| <u>⑤</u> (현행 제14항과 같음) |
|------------------------|
| <u>⑯</u> <u>제15항</u> |
| |
| |
| |
| |
| 제10조의7(임시허가의 취소) ① |
| <u>제10조</u> |
| 의6제8항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
| 2 제9항 |
| <u>제9항</u> |
| |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35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
|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 |
| 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
|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 |
| 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 |

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 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신 설> 제35조의3(포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 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 연번 |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 |
|----|------------|-------------------------------------|--|--|
| 1 | 제35조의3(포상) |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을 | | |
| | |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 |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 연번 | 조·항(조제목) | 미첨부 근거 규정 | | |
|----|------------|--|--|--|
| 1 | 제35조의3(포상) | 제3호 :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매년 포상금을 수여할 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기술적인 추계는 불가 | | |

○ 제35조의3(포상) 매년 포상금을 수여할 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이에 대한

2. 상세 사유

| 기술적인 추계는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부대의견

| O 해당 없음 | | | |
|---------|--|--|--|
| | | | |
| | | | |

Ⅳ. 작성자

O 성명

| 주무관 | 사무관(서기관) | 과장 | 국장 |
|-----|----------|-----|-----|
| - | 김성환 | 전두민 | 이민우 |

O 대표연락처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
| 김성환 | 044-203-4528 | kimsh1013@korea.kr | |